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28	이춘석의원 등 12인	'24.8.19.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3799	강유정의의원 등 10인	'24.9.9.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4576	조계원의의원 등 13인	'24.10.7.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4674	박수영의원 등 13인	'24.10.11.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5294	김준혁의원 등 10인	'24.11.6.	상정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6334	조인철의원 등 13인	'24.12.10.	상정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2.19.)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8439	구자근의원 등 12인	'25.2.26.	상정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2776	김선교의원 등 10인	'25.9.8.	상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3926	조승래의원 등 14인	'25.11.5.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4048	민형배의원 등 10인	'25.11.10.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4269	박수현의원 등 16인	'25.11.14.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4285	김재원의원 등 10인	'25.11.14.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4301	박정하의원 등 11인	'25.11.14.	소위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는 위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압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압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입장권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자료제출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압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

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아.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

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 등)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등)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

주소, 접속 기기정보 등)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제1호 중 “제4조의2제2항을”을 “제4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4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신 설>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 등)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결제정보 등)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등)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

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
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
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략)

<신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신설>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

-----.

1. 제4조의2제1항을-----
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4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u><신 설></u> 제4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 설></u> 2. ~ 6. (생략) ④ . ⑤ (생략)	<u>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u> 제43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u>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